



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

배 포 일	2021. 3. 7. (총 25매)	담당부서	중앙방역대책본부 전략기획팀
팀 장	이 선 규	전 화	043-719-9381
담 당 자	최 상 미		043-719-9365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3월 7일)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3월 7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99명, 해외유입 사례는 17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92,471명(해외유입 7,177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21,183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21,130건(확진자 59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42,313건, 신규 확진자는 총 416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307명으로 총 83,220명(90.00%)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7,617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34명, 사망자는 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634명(치명률 1.77%)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3.7일 0시 기준, '20.1.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399	127	6	8	27	4	1	2	2	169	10	8	6	5	6	11	3	4
누계	85,294	28,138	3,185	8,531	4,319	1,986	1,143	932	215	23,224	1,829	1,760	2,317	1,127	812	3,151	2,065	560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3.7일 0시 기준, '20.1.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추정)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아시아(중국 외)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신규	17	0	9	2	5	1	0	5	12	6	11
누계	7,177	40	3,199	1,240	2,329	346	23	3,008	4,169	3,871	3,306
		(0.6%)	(44.5%)	(17.3%)	(32.5%)	(4.8%)	(0.3%)	(41.9%)	(58.1%)	(53.9%)	(46.1%)

* 아시아(중국 외) : 러시아 4명(3명), 인도네시아 3명(2명), 카자흐스탄 1명, 파키스탄 1명(1명), 유럽 : 폴란드 1명, 체코 1명(1명), 아메리카 : 미국 4명(3명), 캐나다 1명, 아프리카 : 가나 1명(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확진자 관리 현황* ('20.1.3일 이후 누계)】

구분	격리해제	격리 중	위중증 환자**	사망자
3.6.(토) 0시 기준	82,913	7,510	136	1,632
3.7.(일) 0시 기준	83,220	7,617	134	1,634
변동	(+)307	(+)107	(-)2	(+)2

* 3.6일 0시부터 3.7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3월 7일(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3월 7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99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381.1명), 수도권에서 323명(81.0%) 비수도권에서는 76명(19.0%)이 발생하였다.

(주간 : 3.1일~3.7일, 단위 : 명)

구분	전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3.7일(0시 기준)	399	323	17	15	19	11	10	4
주간 일 평균	381.1	302.4	21.0	13.3	16.0	19.4	5.7	3.3
주간 총 확진자 수	2,668	2,117	147	93	112	136	40	23

○ 수도권

(주간 : 3.1일~3.7일, 단위 : 명)

구분	3.1.	3.2.	3.3.	3.4.	3.5.	3.6.	3.7.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수도권	262	241	353	312	309	317	323	302.4	2,117
서울	92	120	116	117	129	126	127	118.1	827
인천	14	10	19	18	12	19	27	17.0	119
경기	156	111	218	177	168	172	169	167.3	1,171

- (서울 노원구 음식점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5명이 추가 확진 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3명*이다.

* (구분) 종사자 2명, 방문자 13명(지표포함), 가족 8명(+5)

- (서울 동대문구 요양병원 관련) 3월 3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 (구분) 종사자 2명(지표포함,+1), 환자 5명(+5), 간병인 1명(+1), 가족 2명(+2), 지인 1명(+1)
- (인천 남동구 요양병원 관련) 3월 1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2명*이다.
* (구분) 종사자 6명(지표포함, +1), 입소자 16명(+5)
- (경기 김포시 요양병원 관련) 3월 2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4명*이다.
* (구분) 종사자 5명(지표포함, +1), 환자 18명(+8), 가족 1명(+1)
- (경기 동두천시 외국인집단발생 관련) 동두천시 임시선별검사를 통해 14명의 외국인이 추가 확진되어 가족, 직장, 커뮤니티 접촉자에 대해 일제검사 등 추적관리가 진행 중이다.

구분	계	2.28.	3.1.	3.2.	3.3.	3.4.	3.5.	3.6.
① 동두천시 검사건	2,993	509	154	351	560	639	529	251
② 외국인 확진자*	146	-	81	15	7	11	18	14

* 확진일 기준 분류로 전일 검사자 다수 포함

- (경기 포천시 지인모임 관련) 접촉자 조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2명*이다.
* (구분) 지인 5명(지표포함), 가족 7명(+2)
- (경기 용인시 운동선수/운동시설 관련) 3월 3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6명이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66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가족 관련	7(+1)	가족 7명(지표포함 +1)
② 운동선수 관련	25(+1)	선수 23명(+1), 종사자 1명, 지인 1명
③ 운동시설 관련	34(+4)	종사자 3명, 이용자 19명(+1), 기타 12명(+3)

○ 충청권

(주간 : 3.1일~3.7일, 단위 : 명)

구분	3.1.	3.2.	3.3.	3.4	3.5.	3.6.	3.7.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충청권	11	15	29	17	28	30	17	21.0	147
대전	-	1	2	3	-	-	1	1.0	7
세종	1	5	4	-	1	1	2	2.0	14
충북	8	5	19	12	19	22	8	13.3	93
충남	2	4	4	2	8	7	6	4.7	33

- (충북 청주시 식품회사 관련) 3월 5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8명*이다.

* (구분) 가족 2명(지표포함), 동료 4명, 지인 1명, 기타 1명(+1)

- (충북 진천 육가공업체2 관련) 3월 4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4명*이다.

* (구분) 종사자 23명(지표포함, +2), 가족 1명

○ 호남권

(주간 : 3.1일~3.7일, 단위 : 명)

구분	3.1.	3.2.	3.3.	3.4	3.5.	3.6.	3.7.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호남권	18	20	11	13	8	8	15	13.3	93
광주	6	4	3	6	5	1	4	4.1	29
전북	10	9	5	6	3	4	5	6.0	42
전남	2	7	3	1	-	3	6	3.1	22

- (광주 서구 콜센터 관련) 3월 5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76명*이다.

* (구분) 종사자 55명(지표포함, +2), 가족 13명, 사우나 4명(+1), 지인 3명, 기타 1명

- (전북 전주시 피트니스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66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피트니스 관련	51(+2)	지표환자(종사자), 이용자 39명(+2), 지인 4명, 가족 4명, 기타 2명
② 주점 관련	8	이용자 6명, 지인 1명, 기타 1명
③ 지인모임 관련	7	지인 7명

○ 경북권

(주간 : 3.1일~3.7일, 단위 : 명)

구분	3.1.	3.2.	3.3.	3.4	3.5.	3.6.	3.7.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경북권	20	16	10	24	7	16	19	16.0	112
대구	10	12	5	19	3	3	8	8.6	60
경북	10	4	5	5	4	13	11	7.4	52

- (대구 중구 가족/체육시설 관련) 3월 3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8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가족 관련	4	가족 4명(지표포함)
② 체육시설 관련	4	종사자 2명, 방문자 1명, 가족 1명

- (대구 북구 대학생지인모임2 관련) 접촉자 조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4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모임 1(음식점1) 관련	8	가족 6명(지표포함), 지인 2명
② 모임 2(음식점2) 관련	12(+1)	지인 5명, 기타 7명(+1)
③ 모임 3(음식점3) 관련	10(+1)	지인 4명(+1), 가족 1명, 기타 5명
④ 모임 4(동전노래방) 관련	4	지인 2명, 기타 2명

- (경북 포항시 교회 관련) 3월 1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 (구분) 교인 6명(지표포함, +2), 지인 1명, 가족 3명(+3), 기타 1명(+1)

○ 강원권

(주간 : 3.1일~3.7일, 단위 : 명)

구분	3.1.	3.2.	3.3.	3.4	3.5.	3.6.	3.7.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강원권	5	2	6	6	4	7	10	5.7	40

- (강원 정선군 교회 관련) 3월 2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8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47명*이다.

* (구분) 교인 15명(지표포함, +1), 가족 14명(+4), 지인 9명(+3), 기타 9명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현황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 정은경)은 3월 7일 0시 기준 신규로 17,131명이 추가 접종받아 314,656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309,387명, 화이자 백신 5,269명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현황(3.7일 0시 기준, '21.2.26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17,131	2,158	1,288	875	617	1,606	375	608	30	2,843	279	330	486	1,797	528	821	2,037	453
누계	314,656	36,452	26,165	15,320	18,906	13,421	7,639	6,467	587	72,109	6,545	11,184	15,914	15,218	16,014	18,688	31,385	2,642

* 2월 26일~3월 5일 접종자 1,145명이 3월 6일 추가로 등록되어 누계에 포함됨

※ 상기 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접종기관 및 대상자별로는 요양병원은 166,240명(81.3%), 요양 시설은 54,069명(49.9%), 1차 대응요원은 2,846명(3.7%),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86,232명(27.2%),

- 코로나19 환자치료병원은 5,269명(9.3%)이 예방접종을 받았다.

【접종기관·대상자별 예방접종 현황(3.7일 0시 기준, '21.2.26일 이후 누계, 단위: 명, %)】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대상자	763,891	132,661	59,947	39,478	42,418	27,916	23,804	14,617	2,237	164,468	23,570	23,414	32,132	32,025	36,715	43,455	56,166	8,868
	접종자	314,656	36,452	26,165	15,320	18,906	13,421	7,639	6,467	587	72,109	6,545	11,184	15,914	15,218	16,014	18,688	31,385	2,642
	접종률	41.2	27.5	43.6	38.8	44.6	48.1	32.1	44.2	26.2	43.8	27.8	47.8	49.5	47.5	43.6	43.0	55.9	29.8
요양병원	대상자	204,592	17,188	21,345	8,761	10,897	8,899	6,152	4,790	342	47,396	3,979	6,196	9,392	9,829	12,255	15,194	21,082	895
	접종자	166,240	12,910	17,640	7,202	9,063	8,031	5,119	4,129	323	36,077	3,036	5,377	7,943	8,742	10,822	11,424	17,711	691
	접종률	81.3	75.1	82.6	82.2	83.2	90.2	83.2	86.2	94.4	76.1	76.3	86.8	84.6	88.9	88.3	75.2	84.0	77.2
요양시설	대상자	108,461	7,742	3,722	4,602	7,601	2,083	3,790	1,247	368	32,350	5,626	5,478	6,202	5,056	5,691	7,682	6,736	2,485
	접종자	54,069	4,234	2,290	2,558	3,276	1,775	1,422	383	102	11,105	2,793	2,643	4,515	3,628	4,008	3,397	4,653	1,287
	접종률	49.9	54.7	61.5	55.6	43.1	85.2	37.5	30.7	27.7	34.3	49.6	48.2	72.8	71.8	70.4	44.2	69.1	51.8
1차 대응요원	대상자	77,386	10,320	4,132	2,029	4,606	1,649	1,483	1,235	579	12,812	4,436	3,757	6,217	4,386	6,308	6,517	5,509	1,411
	접종자	2,846	198	168	38	112	67	48	26	12	867	90	252	38	197	163	163	393	14
	접종률	3.7	1.9	4.1	1.9	2.4	4.1	3.2	2.1	2.1	6.8	2.0	6.7	0.6	4.5	2.6	2.5	7.1	1.0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의료기관 이상반응 이상반응 기관	대상자	316,989	84,701	26,757	21,176	11,262	14,218	8,971	4,909	201	62,929	8,356	5,354	8,932	11,649	11,683	12,191	21,382	2,268
	접종자	86,232	16,455	5,902	4,860	6,193	3,469	1,050	1,897	150	23,795	554	2,851	3,070	2,579	797	3,704	8,256	650
	접종률	27.2	19.4	22.1	23.0	55.0	24.4	11.7	38.6	74.6	37.8	6.6	53.2	34.4	22.1	6.8	30.4	38.6	28.7
코로나19 치료를 받은 환자	대상자	56,513	12,710	3,991	2,910	8,052	1,067	3,408	2,436	747	8,981	1,173	2,629	1,389	1,105	778	1,871	1,457	1,809
	접종자	5,269	2,655	165	662	262	79	0	32	0	265	72	61	348	72	224	0	372	0
	접종률	9.3	20.9	4.1	22.7	3.3	7.4	0.0	1.3	0.0	3.0	6.1	2.3	25.1	6.5	28.8	0.0	25.5	0.0

* 접종대상 : (아스트라제네카)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종사자, 1차 대응요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화이자)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 정신의료기관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정신 의료기관은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입원환자를 포함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
 (3.7일 0시 기준)는 총 3,689건*(신규 806건)으로,

* 2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중복 신고 가능

- 3,643건(신규 794건)은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두통, 발열, 메스꺼움, 구토 등 경미한 사례였으며,
- 33건(신규 9건)의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경련 등 5건(신규 2건)의 중증 의심 사례, 8건(신규 1건)의 사망 사례가 보고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다.

* 아나필락시스 쇼크, 아나필락시스양, 아나필락시스로 구분

【코로나19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신고현황(3.7일 0시 기준, '21.2.26일 이후 누계, 단위: 명)】

구분	접종자수 (누계)	합계	일반 ¹⁾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 ²⁾	중증 의심사례 ³⁾	사망사례
전체	신규	806	794	9	2	1
	누계	314,656	3,689	3,643	33	5
아스트라제네카	신규	804	792	9	2	1
	누계	309,387	3,671	3,625	33	5
화이자	신규	2	2	-	-	-
	누계	5,269	18	18	-	-

1) 두통, 발열, 메스꺼움, 구토 등 경증 사례

2) 아나필락시스양 반응(32건)* 및 아나필락시스 쇼크(1건) 의심사례로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사례

* 예방접종 후 2시간 이내 호흡곤란,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로 아나필락시스와는 다름

3) 경련(1건), 중환자실 입원(4건) 포함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건으로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이며, 사망이나 아나필락시스 등의 중증사례에 한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인과성을 평가함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어제 3.6일 14시 이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2건의 사망사례가 신고되어, 역학조사 및 피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망자 A씨(여, 50대)는 요양병원 입원환자로 기저질환이 있으며, 3.2일 10시경 코로나19 예방접종(아스트라제네카) 후 특이사항 없이 지내다 4일(104시간) 경과 후 3.6일 18시 사망을 확인하였다.
- 사망자 B씨(여, 60대)는 요양병원 입원환자로 기저질환이 있으며, 2.26일 11시경 코로나19 예방접종(아스트라제네카) 후 8일(199시간) 경과 후 3.6일 18시경 사망하였고, 3.7일 0시 이후 신고되었다.

※ 3.8일 0시 통계에 반영할 예정임

* 상기 2건은 모두 유가족의 요청에 의해 상세정보는 공개하지 않음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1. ~ '21.3.14.)
 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1. ~ '21.3.14.)
 5.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 <별첨> 1.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2.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점검표
 3. 새로운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4.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5.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 2, 3편
 6.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7.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8.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9.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10.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11.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12.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3.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4.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5.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6.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9.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0.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21.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1 일일 확진자 현황 (3.7. 0시 기준, 92,47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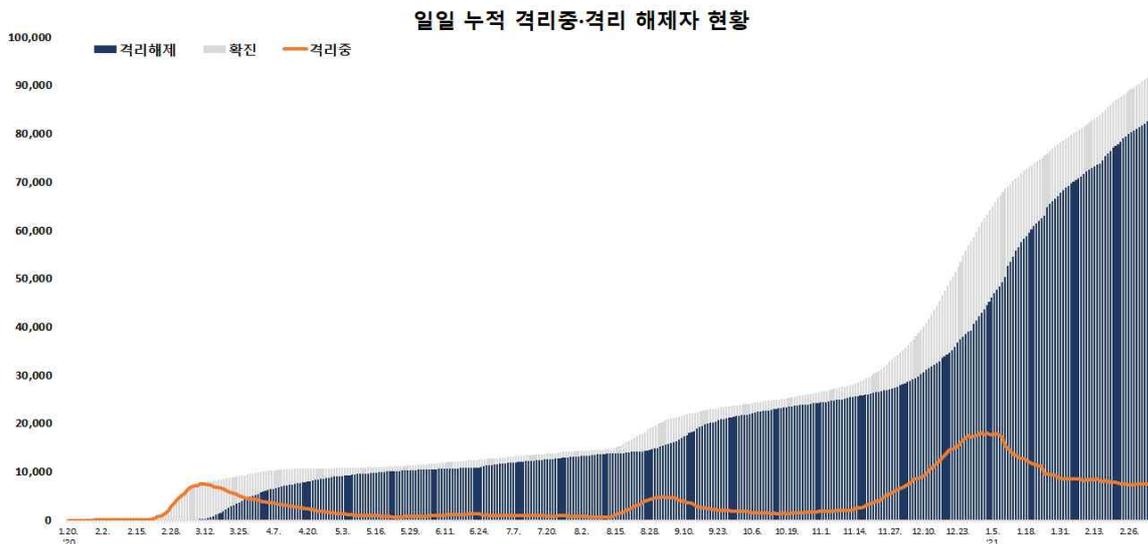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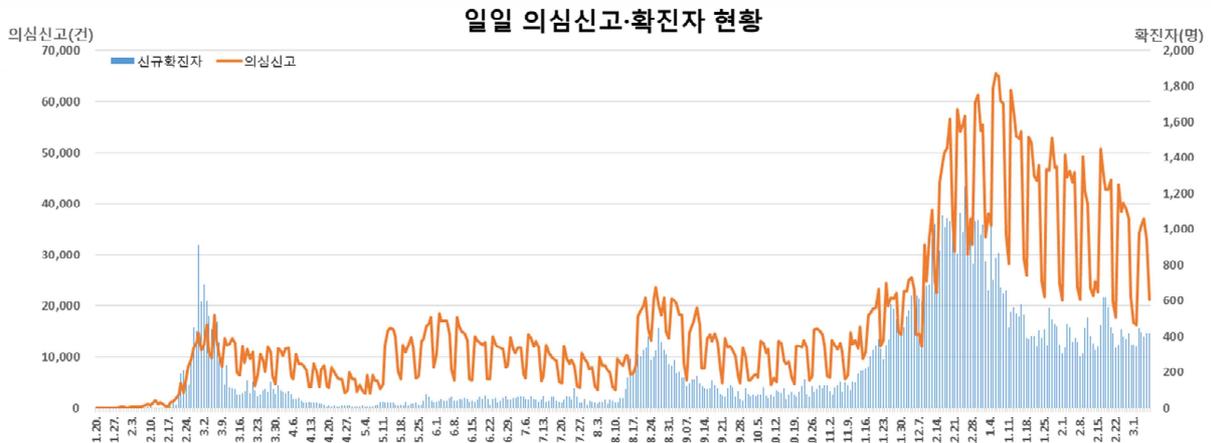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 ('20.1.3일 이후 누계) >

구 분	총 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3.6.(토) 0시 기준	6,821,943	92,055	82,913	7,510	1,632	65,171	6,664,717
3.7.(일) 0시 기준	6,843,126	92,471	83,220	7,617	1,634	66,396	6,684,259
변동	+21,183	+416	+307	+107	+2	+1,225	+19,542

* 3.6일 0시부터 3.7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 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② 지역별 확진자 현황 (3.7. 0시 기준, 92,471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 ('20.1.3일 이후 누계) >

지역	금일신규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국내발생	해외유입			
서울	127	5	29,079	(31.45)	298.75
부산	6	0	3,320	(3.59)	97.31
대구	8	0	8,688	(9.40)	356.58
인천	27	1	4,555	(4.93)	154.09
광주	4	0	2,118	(2.29)	145.40
대전	1	0	1,197	(1.29)	81.20
울산	2	0	1,025	(1.11)	89.36
세종	2	0	241	(0.26)	70.40
경기	169	3	24,760	(26.78)	186.86
강원	10	0	1,904	(2.06)	123.59
충북	8	1	1,851	(2.00)	115.73
충남	6	0	2,482	(2.68)	116.94
전북	5	0	1,233	(1.33)	67.85
전남	6	0	881	(0.95)	47.25
경북	11	2	3,318	(3.59)	124.62
경남	3	0	2,219	(2.40)	66.02
제주	4	0	593	(0.64)	88.41
검역	0	5	3,007	(3.25)	-
총합계	399	17	92,471	(100)	178.35

* 지역별 '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지역별 인구 ('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 ('20.1.3일 이후 누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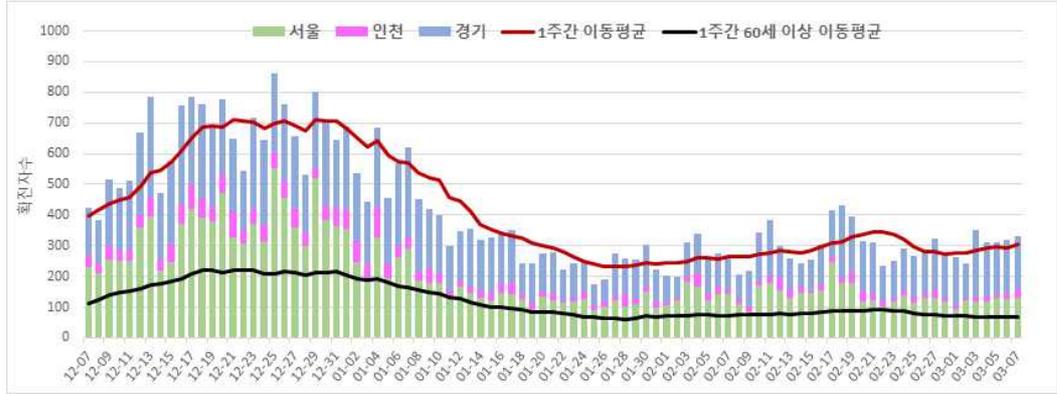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검역
격리 중	7,617	2,977	203	108	247	118	25	24	23	2,421	83	164	147	103	74	120	55	40	685
격리해제	83,220	25,708	3,008	8,366	4,255	1,979	1,157	964	217	21,837	1,779	1,629	2,300	1,075	799	3,127	2,150	552	2,318
사망	1,634	394	109	214	53	21	15	37	1	502	42	58	35	55	8	71	14	1	4
합계	92,471	29,079	3,320	8,688	4,555	2,118	1,197	1,025	241	24,760	1,904	1,851	2,482	1,233	881	3,318	2,219	593	3,007

* 3.6일 0시부터 3.7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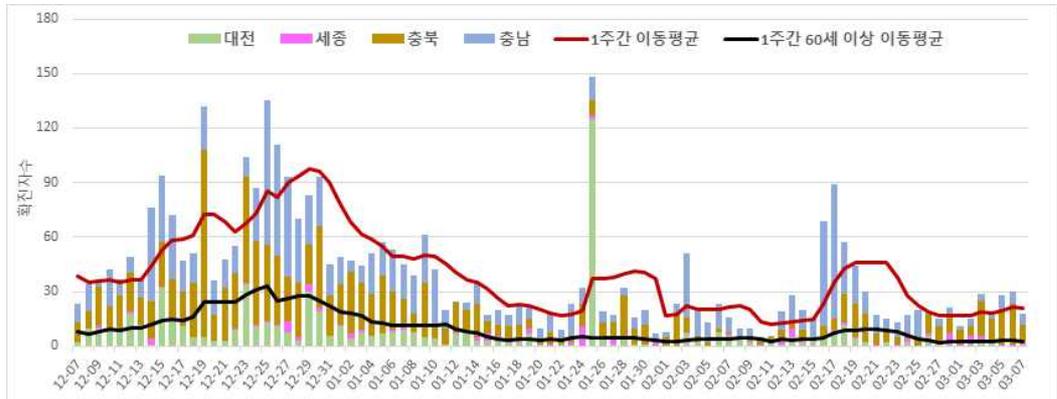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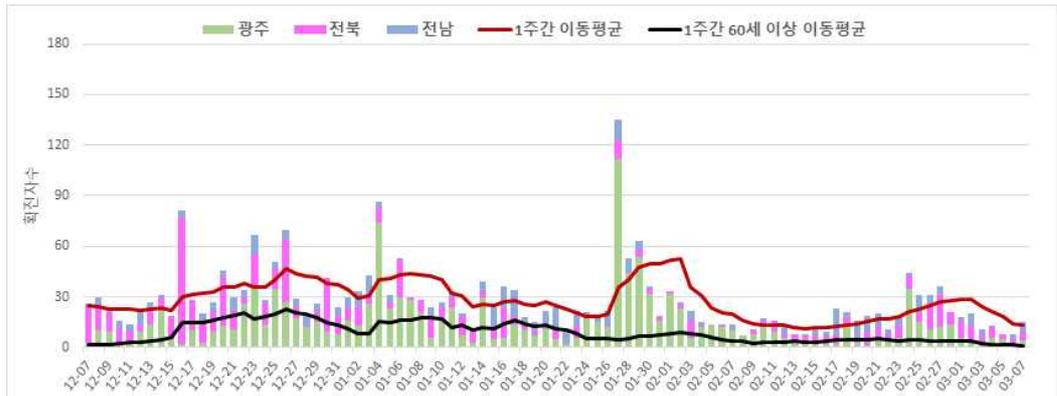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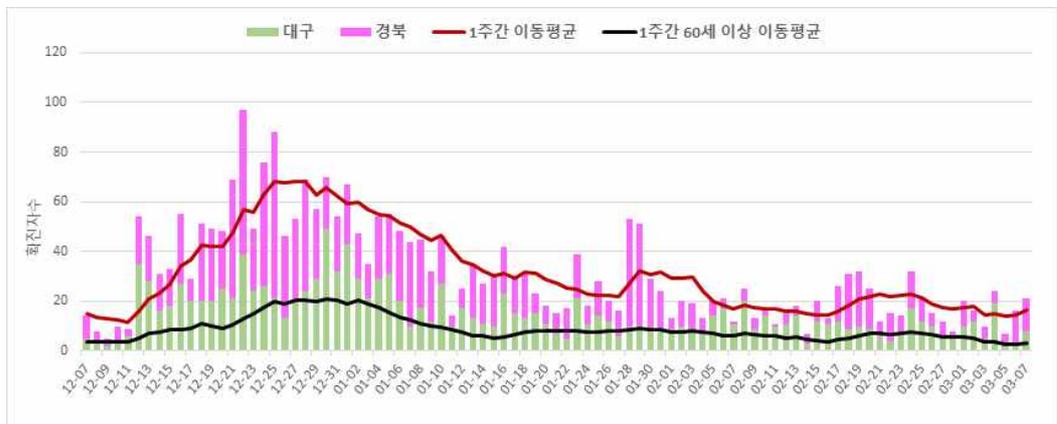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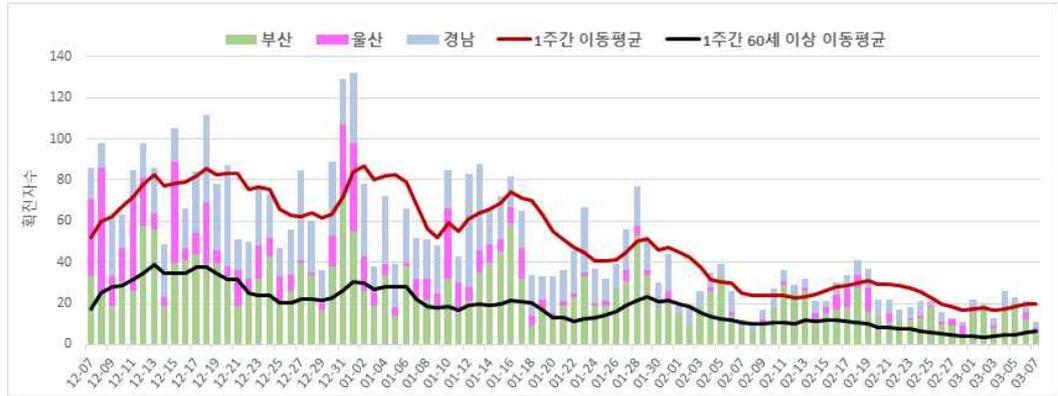


경북권
(대구, 경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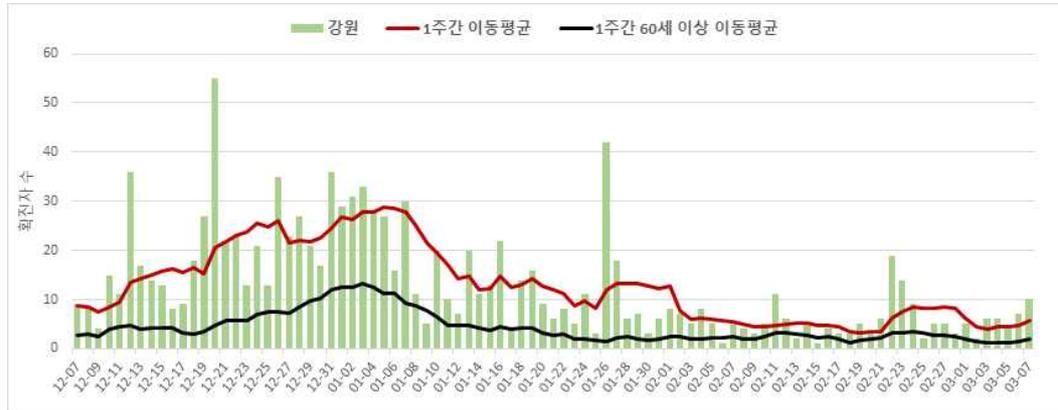


<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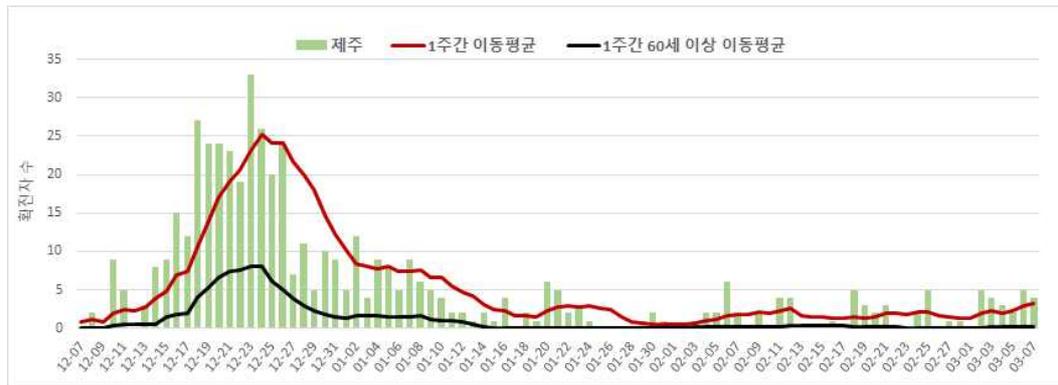
경남권
(부산, 울산,
경남)



강원권
(강원)



제주권
(제주)



③ 성별 · 연령별 확진자 현황 (3.7. 0시 기준, 92,471명)

<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

구 분		금일 신규 (%)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계		416 (100)	92,471 (100)	178.35
성별	남성	218 (52.40)	45,720 (49.44)	176.78
	여성	198 (47.60)	46,751 (50.56)	179.92
연령	80세 이상	16 (3.85)	4,463 (4.83)	234.99
	70-79	37 (8.89)	6,973 (7.54)	193.31
	60-69	53 (12.74)	14,381 (15.55)	226.68
	50-59	66 (15.87)	17,161 (18.56)	198.00
	40-49	53 (12.74)	13,298 (14.38)	158.51
	30-39	65 (15.63)	12,160 (13.15)	172.60
	20-29	77 (18.51)	13,982 (15.12)	205.42
	10-19	31 (7.45)	6,260 (6.77)	126.71
0-9	18 (4.33)	3,793 (4.10)	91.43	

*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④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현황 (3.7. 0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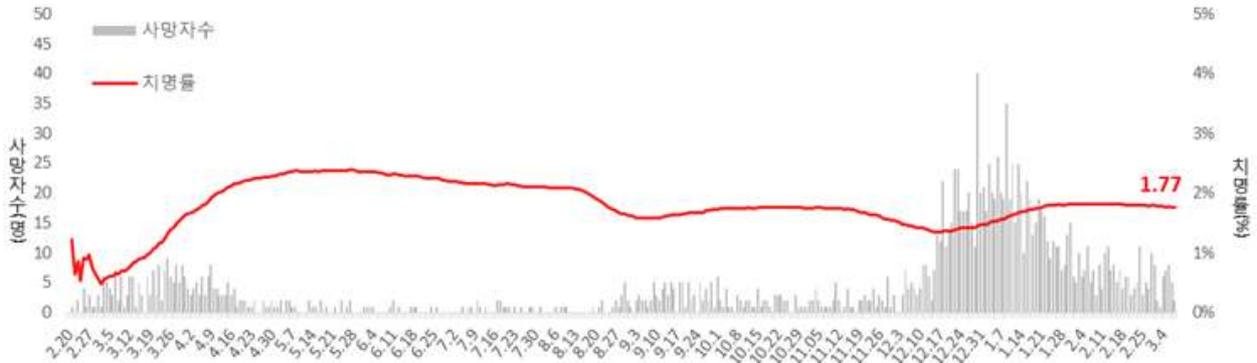
<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

구 분		신규 사망 (%)	사망누계 (%)	치명률(%)
계		2 (100)	1,634 (100)	1.77
성별	남성	1 (50.00)	813 (49.76)	1.78
	여성	1 (50.00)	821 (50.24)	1.76
연령	80세 이상	1 (50.00)	922 (56.43)	20.66
	70-79	1 (50.00)	451 (27.60)	6.47
	60-69	0 (0.00)	186 (11.38)	1.29
	50-59	0 (0.00)	54 (3.30)	0.31
	40-49	0 (0.00)	14 (0.86)	0.11
	30-39	0 (0.00)	6 (0.37)	0.05
	20-29	0 (0.00)	1 (0.06)	0.01
	10-19	0 (0.00)	0 (0.00)	0.00
0-9	0 (0.00)	0 (0.00)	0.00	

*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 일별 사망자 현황 >



< 위중증 현황 >

구분	2.22.	2.23.	2.24.	2.25.	2.26.	2.27.	2.28.	3.1.	3.2.	3.3.	3.4.	3.5.	3.6.	3.7.
계	146	148	140	144	144	142	135	131	135	129	140	135	136	134

구분	위중증	(%)
계	134	(100.0)
80세 이상	28	(20.9)
70-79세	47	(35.1)
60-69세	42	(31.3)
50-59세	15	(11.2)
40-49세	0	(0.0)
30-39세	2	(1.5)
20-29세	0	(0.0)
10-19세	0	(0.0)
0-9세	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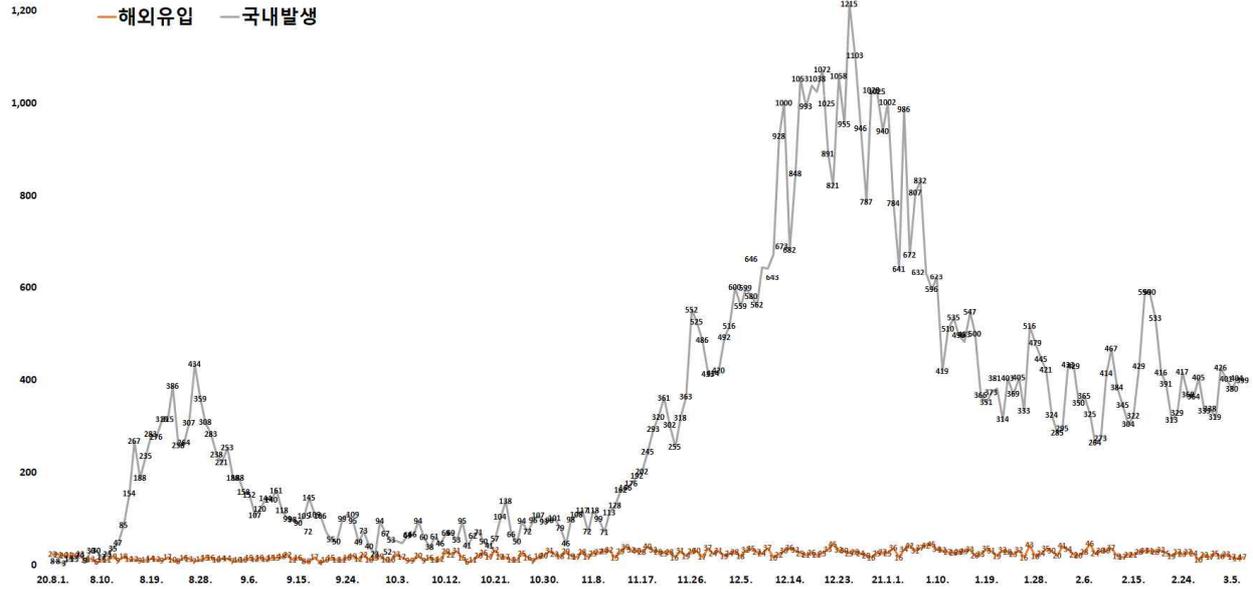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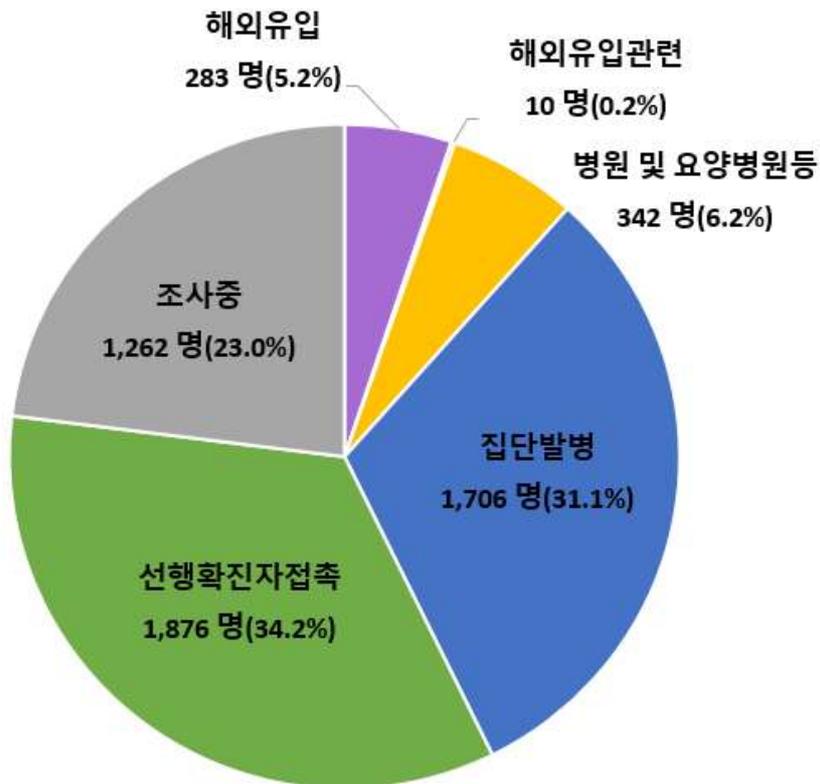
5 감염경로

< 감염경로 구분에 따른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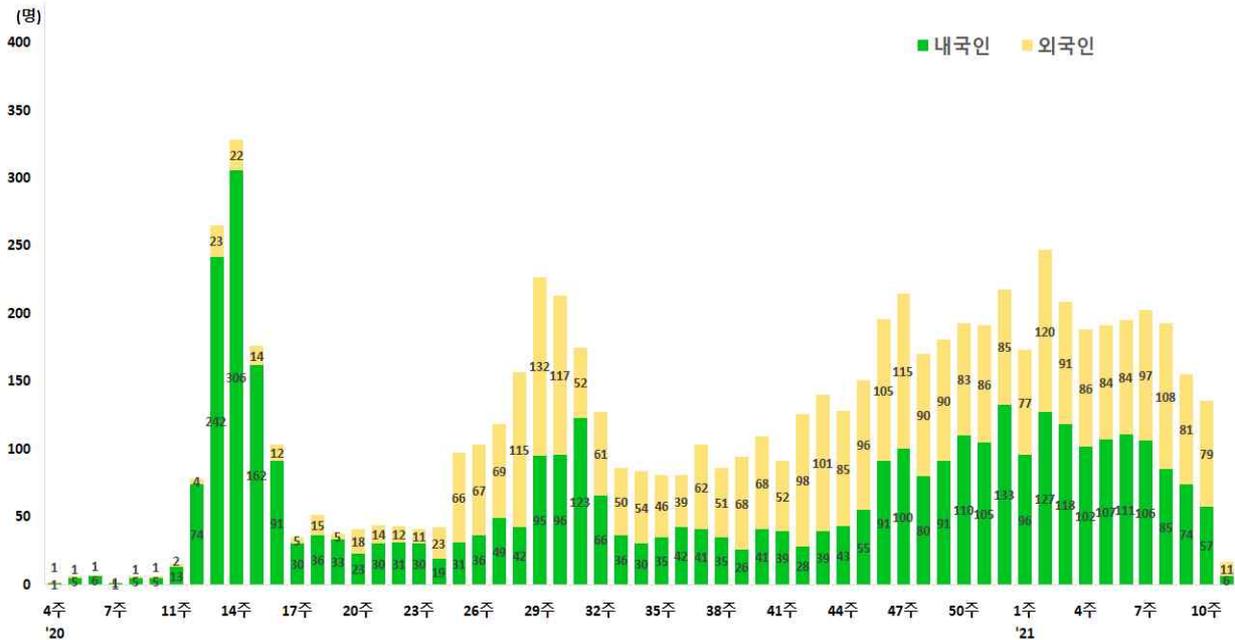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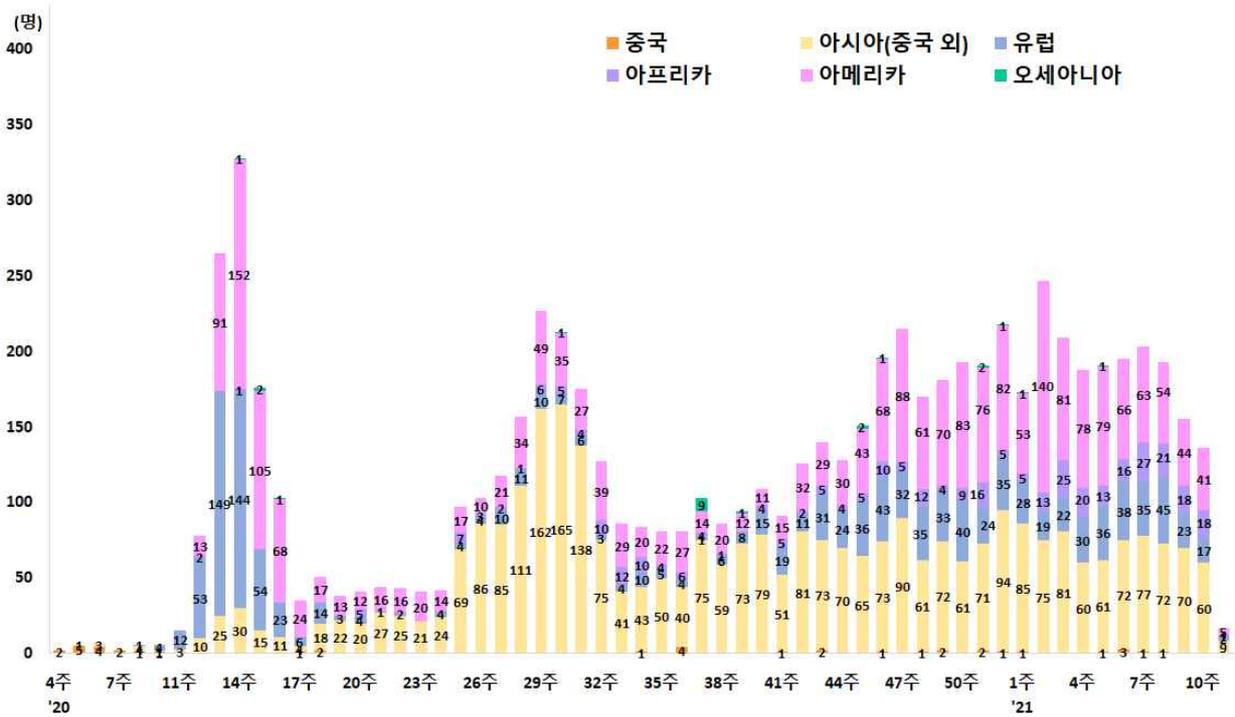
(단위:명)



< 최근 2주간 ('21.2.22일 0시~'21.3.7일 0시까지 신고된 5,479명) 감염경로 구분 >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



< 주요 집단 발생 현황 >

지역	확진환자(단위: 명, %)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누계	해외 유입	집단발생 관련				기타*	조사중	신규	
			소계	신천지 관련	집단 발생	해외유입 관련				
서울	29,079	941	10,907	8	10,799	100	9,540	7,691	132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사례>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 서울 646명, 경기 394명, 인천 52명 등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 * 서울 142명, 경기 134명, 대구 103명 등 • 서울 강서구 댄스교습 관련(329명) • 서울 종로구 음식점/노래교실 관련(315명) • 클럽 관련(277명) * 서울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등 •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 경기 129명, 서울 77명, 인천 8명 등 • 리치웨이 관련(210명) * 서울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등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 서울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등 • 구광물류센터 관련(152명) * 경기 67명, 인천 61명, 서울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 광주 139명, 전남 8명 등 • 수도권 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 인천 57명, 서울 37명, 경기 25명 •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 관련(1,232명) • 서울 강서구 종교시설 관련(258명) • 서울 노랑진 임용단기학원 관련(112명) • 서울 성동구 대학병원 관련(114명) • 충북 과천시 음향전문공연장인생시병원 관련(42명) • IM선교회 미인가교육시설 관련(420명) • 광주 서구 교회 관련(145명) •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 관련(808명) • 부산/울산 장구강습 관련(268명) • 경남 진주시 기도원 관련(120명) <최근 발생 주요 사례> • 서울 용산구 대학병원 관련(282명) • 서울 용산구 지인모임 관련(85명) • 경기 남양주시 플라스틱공장 관련(195명) • 경기 동두천시 외국인집단 관련(146명) • 경기 부천시 영생교/보습학원 관련(179명) • 경기 고양시 춤무도장 관련(89명) • 경기 성남시 춤무도장 관련(96명) • 경기 성남시 요양병원 관련(85명) • 충남 아산시 난방기공장 관련(210명) • 광주 광산구 요양병원 관련(174명) • 경북 의성군 기림요양병원 관련(12명)
부산	3,320	135	2,050	12	1,981	57	675	460	6	
대구	8,688	157	6,441	4,512	1,922	7	1,142	948	8	
인천	4,555	236	2,128	2	2,116	10	1,423	768	28	
광주	2,118	132	1,698	9	1,683	6	141	147	4	
대전	1,197	54	643	2	640	1	313	187	1	
울산	1,025	93	725	16	705	4	129	78	2	
세종	241	26	118	1	116	1	48	49	2	
경기	24,760	1,536	9,842	29	9,734	79	8,375	5,007	172	
강원	1,904	75	1,070	17	1,052	1	492	267	10	
충북	1,851	91	1,009	6	996	7	470	281	9	
충남	2,482	165	1,308	0	1,307	1	605	404	6	
전북	1,233	106	878	1	876	1	128	121	5	
전남	881	69	628	1	616	11	97	87	6	
경북	3,318	167	2,322	565	1,753	4	489	340	13	
경남	2,219	154	1,375	33	1,309	33	388	302	3	
제주	593	33	377	0	376	1	106	77	4	
검역	3,007	3,007	0	0	0	0	0	0	5	
합계	92,471 (%)	7,177 (7.8)	43,519 (47.1)	5,214 (5.6)	37,981 (41.1)	324 (0.4)	24,561 (26.6)	17,214 (18.6)	416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6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및 확진자 현황 (3.7. 0시 기준)

구분	임시선별 검사소 수 (개소) ¹⁾	검사(건)					확진자(명)
		계	비인두도말 PCR	타액 PCR	신속항원 검사	2차 비인두도말 PCR ²⁾	
신규	0	21,130	21,117	0	13	0	59
서울	0	7,230	7,226	0	4	0	17
경기	0	12,408	12,399	0	9	0	37
인천	0	1,492	1,492	0	0	0	5
누계	97	2,377,082	2,354,980	4,235	17,819	48 ³⁾	6,407
서울	26	1,044,121	1,036,070	1,485	6,546	20	3,172
경기	65	1,153,919	1,140,152	2,719	11,021	27	2,853
인천	6	179,042	178,758	31	252	1	382

1) (임시선별검사소 수)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실적

2) (2차 비인두도말 PCR)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해 확진 검사 실시

3) 양성 32건, 음성 16건

7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 (3.1.~3.7.)

구분	3.1.	3.2.	3.3.	3.4.	3.5.	3.6.	3.7.	주간누계	총 누계
계	32,953	30,996	64,743	63,375	64,381	62,636	42,313	361,397	9,220,208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 ¹⁾	16,749	16,221	34,227	35,697	37,111	32,932	21,183	194,120	6,843,126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건) ²⁾	16,204	14,775	30,516	27,678	27,270	29,704	21,130	167,277	2,377,082
신규 확진자 수(명)	355	344	444	424	398	418	416	2,799	92,471
임시선별검사소 확진자 수(명)	57	53	113	64	57	75	59	478	6,407

1) (의심신고 검사자 수) 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결과 음성+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2)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붙임 2 |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누적발생 800,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감시 국가

<단위: 명>

구분	누적 발생		신규 발생		치명률 (%)	인구10만명당 발생자 수 ¹⁾
	확진자	사망자	확진자	사망자		
미국 ²⁾	28,468,736	515,013	-	-	1.81	8,600.83
인도	11,192,088	157,656	18,327	108	1.41	811.02
브라질	10,793,732	260,970	75,102	1,699	2.42	5,077.01
러시아	4,312,181	88,726	11,022	441	2.06	2,955.57
영국	4,207,308	124,261	5,946	236	2.95	6,196.33
프랑스	3,791,524	87,776	22,725	405	2.32	5,806.32
스페인 ²⁾	3,142,358	70,501	-	-	2.24	6,714.44
이탈리아	3,023,129	99,271	24,010	297	3.28	4,996.91
터키	2,757,460	28,901	11,302	62	1.05	3,271.01
독일	2,492,079	71,804	9,557	300	2.88	2,973.84
콜롬비아	2,266,211	60,189	3,565	107	2.66	4,452.28
아르헨티나	2,141,854	52,784	11,767	279	2.46	4,738.62
멕시코	2,112,508	188,866	7,521	822	8.94	1,638.87
폴란드 ²⁾	1,766,490	44,912	-	-	2.54	4,673.25
이란	1,673,470	60,512	8,367	81	3.62	1,992.23
남아프리카공화국	1,518,979	50,566	1,313	104	3.33	2,561.52
우크라이나	1,394,061	26,919	9,144	156	1.93	3,190.07
인도네시아	1,368,069	37,026	6,971	129	2.71	500.21
페루	1,349,847	47,306	4,878	217	3.50	4,090.45
체코	1,312,164	21,558	13,162	233	1.64	12,263.21
네덜란드	1,110,213	15,762	4,727	32	1.42	6,492.47
캐나다	878,391	22,151	2,832	46	2.52	2,329.95
칠레	845,450	20,928	5,331	90	2.48	4,426.44
루마니아	820,931	20,785	4,342	101	2.53	4,275.68
포르투갈	808,405	16,486	1,489	28	2.04	7,925.54
필리핀	587,704	12,423	3,037	19	2.11	536.23
방글라데시	549,184	8,441	635	6	1.54	333.45
일본	437,892	8,178	1,164	59	1.87	346.16
헝가리	459,816	15,765	7,269	146	3.43	4,740.37
네팔	274,608	3,010	120	0	1.10	943.67
미얀마	142,000	3,200	0	0	2.25	261.03
중국	89,975	4,636	13	0	5.15	6.25
키르기스스탄	86,506	1,471	55	1	1.70	1,330.86
우즈베키스탄	80,125	622	44	0	0.78	239.18
태국	26,305	85	64	0	0.32	37.69
베트남	2,501	35	13	0	1.40	2.57
대한민국	92,471	1,634	416	2	1.77	178.40

1) 국가별 총 인구수 : 유엔인구기금(UNFPA) '20년 기준, 대한민국 '20.1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2) WHO 집계방식에 따라 실제 발생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전일 대비 누적/신규 발생 업데이트 없음)

붙임 3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1. ~ '21.3.14.)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연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상)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실내 스탠딩공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사·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①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영화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트·상점 (300㎡ 이상)	▶ 마스크 착용 ▶ 주기적 환기·소독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중단 ▶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 10% 이내 입장
등교	▶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종교활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붙임 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1. ~ '21.3.14.)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1.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섭취 금지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 뷔페의 경우 공용집계접사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인원의 50%로 인원제한 ▶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직업훈련기관	
결혼식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방역수칙 조정)
영화관	▶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 마스크 착용
마트·상점 (300㎡ 이상)	▶ 마스크 착용 ▶ 주기적 환기·소독
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20% 이내로 인원 제한 ▶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등 시설 및 지자체에 협의·신고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스포츠 경기장 등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스포츠 관람	▶ 3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 밀집도 2/3 준수
종교활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붙임 5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중 감염병의 보도

-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중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학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의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등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 ‘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땀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을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 ④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